
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을 “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” 를 “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에 집회하되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집회한다. 로 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
제4조 (정례회의 집회일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	제4조 (정례회의 집회일)....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0일에 집회한다. <u><신설></u>	2. <u>다만,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에 집회하되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집회한다.</u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